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2.27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1740(2020.12.6.)
- 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1881(2020.12.7.)
- 라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3197(2020.12.17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2.27.)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.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('20.12.24.~'21.1.3.)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3. 중앙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,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(현재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조치 완화는 가급적 지양)

**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“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”를 참고해 주십시오.

- 아 래 -

○ 적용 기간 : 2020년 12.29(0시) ~ 2021년 1.3(24시)까지

○ 대상 지역 :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

*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

1)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식당 · 카페(일반음식점 · 휴게음식점 · 제과점)
 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 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 -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· 음료 ·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· 배달만 허용
- 붙임1.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**

4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

-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
 - 각 지자체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,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지사



주무관	김현아	행정사무관	이리향	생활방역팀장	김정숙	전략기획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	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	강도태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	권덕철		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4620** 접수 **학생건강정책과-11151** (2020. 12. 28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10동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9 팩스번호 044-202-3942 / wipre247@korea.kr / 비공개(5)